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6683

발의연월일: 2024. 12. 18.

발 의 자: 박홍배 · 윤준병 · 정태호

김재원 · 김태년 · 김현정

김우영 • 박정현 • 서미화

김민석 • 민병덕 • 이광희

이용우 • 박지원 • 이연희

박해철 • 강훈식 • 문진석

복기왕 · 김한규 · 한준호

조승래 • 염태영 • 정진욱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계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노동운동의 역사를 기리기 위한 메이데이(MAY DAY) 정신에 입각하여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근로자의 날)로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지정하고 있음.

하지만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 공휴일로 인정하고 있지 않게 때문에, 일부 민간기업에서만 자율적으로 휴일을 적용하고, 공무원을 포함한 관공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의 날 본연의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생함.

이에 5월 1일 노동절을 「공휴일에 관한 법률」상의 공휴일로 지정

하여, 민간과 관공서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가 세계 노동운동의 가치와 정신을 되새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5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6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5호부터 제10호까지를 제6호부터 제1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노동절 (5월 1일)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 <신 설></u>	<u>5. 노동절 (5월 1일)</u>
<u>5.</u> ~ <u>10.</u> (생 략)	<u>6.</u> ~ <u>11.</u> (현행 제5호부터 제1
	0호까지와 같음)